보건복지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3.(월) 조간 / 2026. 11. 22.(일) 12:00 배포 2026. 11. 20.(금)

대체인력 사고도 보장한다

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확대

-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사실 확인 후 보상 -

-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종합공제 가입 대상으로 확대 -

- 【관련 국정과제】 79.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한국사회복지공제회**, **한국장애인개발원**과 함께 **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**하기 위해 **'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'**(이하 종합공제)를 개선하여 **현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**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선으로 **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**받을 수 있도록 하고, **가입 대상을 확대**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**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** 등을 **종합적으로 보장**하는 보험이다.

올해 9월 발표한 **「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」을**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**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**하다.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**도전행동**(자해·타해·기물파손 등) 대응 과정에서 종사자 부상, 이용자 상해 등 **사고 위험이 커서 종사자의 참여에 부담**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공제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**더 많은 종사자가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** 개선하였다.

주요 개선 사항은 **대체인력 사고 보장**과 **가입 대상 확대**이다. 그동안 종사자 변경이나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웠으나, 앞으로는 근무 기록, 계약서 등 **서류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**받을 수 있다. 그리고

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 중인 **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**도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**종합공제에 가입**할 수 있다.

또한, **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**를 **추가로 신설**한다.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**중대한 사고가 발생**한 경우에도 피해 종사자와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**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**(사고당 최대 10억 원)**을 신설**하며, 이는 **별도 공제료 추가 납입 없이 자동 가입**된다.

개선된 내용은 **11월 22일(일)부터 자동 적용**된다. 또한,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종합공제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**의견조사를 실시**하여 **현장 수요에 맞도록 종합공제를 지속적으로 보완**해 나갈 계획이다.

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, 긴급돌봄, 주간·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며, 현재 **기관 단위로 신청**할 수 있다. **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**으로,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**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**(www.kwcu.or.kr)에서 신청할 수 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**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(02-3667-8830)**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.

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개선으로 **종사자가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**이 되길 바란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**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 개선**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

담당 부서 <총괄>	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이고운 (044-202-3340)
		담당자	사무관	나민정 (044-202-3347)
	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지원팀	책임자	팀 장	강지현 (02-3433-0741)
		담당자	담당자	신수련 (02-3433-0743)
	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계약실	책임자	본부장	황성철 (02-3775-8801)
		담당자	실 장	강춘남 (02-3775-1685)

붙임 **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안내문**



잠깐!!!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상품이 더 큰 보장으로 바뀌었습니다.

▸ **주요 변경 사항** (변경일자 : 2026.11.22~)
- 근로자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 신설

보장내용		보상한도	자기부담금
배상책임	대인 배상	인당 1.5억원 (사고당 5억원)	배상책임액 50만원 이하 ▶ 배상책임액의 20% 배상책임액 50만원 초과 ▶ 10만원
	대물 배상	사고당 1억원	
	대물 배상 (수행기관 재물손해)	500만원 (연간 총 보상한도)	
	음식물 특별약관	인당 3천만원 (사고당 1억원)	30만원
비용손해	형사 방어비용	5백만원	
	형사 벌금	2천만원	
종사자상해	상해 사망	5천만원	
	상해 후유장해	5천만원 * 장해율	
	상해 입원일당비	일당 2만원 (180일 한도)	
	상해 골절진단비	사고건당 30만원	
	상해 화상진단비	사고건당 30만원	
	상해중증화상진단비	사고건당 200만원	
	상해수술지원비	10만원~500만원 (1~5종)	
	상해 치료비 (종사자)	사고당 1천만원 (본인부담 병원비 2만원 이상시)	인정치료비의 30%
	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	사고당 30만원	
장애인상해	상해 치료비 (장애인)	사고당 1천만원	인정치료비 50만원 이하 ▶ 인정치료비의 20% 인정치료비 50만원 초과 ▶ 10만원
중대사고	중대사고 배상책임	사고당 10억 총 보상한도 10억	
	중대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		손해액의 20%
	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지원금	1사건당 500만원	
	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	"중대사고 배상책임" 담보 가입금액 5% 내	
	중대(산업재해)만의 보장	-	

* 2026. 11. 22. 이전에 가입한 기관도 2026. 11. 22.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변경된 담보로 보장됩니다.

공제보장내용

배상책임부문

담보	보상한도	자기부담금 (사고당)	비고
대인배상	1인당 1.5억 원 / 1사고당 5억 원	배상책임액 50만원 이하 ▶ 배상책임액의 20%	돌봄업무 수행중(구내/구외) 발달장애인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
대물배상	사고당 1억원		
대물배상 (수행기관 재물손해)	500만원 (연간 총 보상한도)	배상책임액 50만원 초과 ▶ 10만원	돌봄업무 수행중 발달장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행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
음식물배상	1인당 3천만 원 / 1사고당 1억 원	30만원	돌봄업무 수행중(구내/구외)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사고로 부담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

비용손해부문

담보	보상한도	자기부담금 (사고당)	비고
형사 방어비용	5백만 원	미적용	돌봄업무 수행 중(구내/구외)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추를 당해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비용
형사 벌금	2천만 원	미적용	돌봄업무 수행 중(구내/구외) 발생한 사고로 형사소추를 당해 사법기관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

종사자 상해부문

담보	보상한도	자기부담금	비고
상해 사망	5천만원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
상해 후유장해	5천만원 * 장해율	미적용	
상해 입원일당	1일당 2만원 (180일 한도)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/의원에 입원한 경우
상해 골절진단비	사고건당 30만원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골절로 진단 확정시
상해 화상진단비	사고건당 30만원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(심재성 2도 이상)
상해중증화상진단비	사고건당 200만원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(3도 이상)
상해 수술지원비	10만원 ~ 500만원 (1종~5종)	미적용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수술시 * 수술종별 지급금액은 홈페이지 및 약관참고
상해 치료비(종사자)	사고당 1천만원 (본인부담 병원비 2만원 이상시)	인정치료비의 30%	업무 중·업무 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/의원에서 치료시
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	사고당 30만원	미적용	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충격 등(업무관련자 등에 의한 폭행 등으로 발생)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확정시

※ 공제와 단체상해공제(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, 일반단체상해공제)와 중복가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가입하여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.

발달장애인 상해부문

담보	보상한도	자기부담금 (사고당)	비고
발달장애인 상해치료비	사고당 1천만원	인정치료비 50만원 이하 ▶ 인정치료비의 20% 인정치료비 50만원 초과 ▶ 10만원	돌봄업무 수행 중(구내/구외) 발달장애인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의료비

발달장애인지원사업종합공제 (중대사고배상책임)

담보	가입금액	보장내용	자기부담금
중대사고 배상책임	사고당 10억 총 보상한도 10억	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	
중대사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		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 제 15조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손해를 보상 (단,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중복 보상하지 않음)	손해액의 20%

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지원금	1사건당 500만원	피공제자가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고소, 고발, 진정, 인지,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대해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,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지원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 1회한 정액 지급	
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	"중대 사고 배상책임" 담보 가입금액 5% 내	위기 이후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비용	
중대(산업재해)만의 보장	-	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 제2조(정의) 중 "중대산업재해"만 보장	

※ "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(중대사고배상책임)"는 "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"와 별도의 상품입니다.
("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" 가입시 자동 가입)
※ 본 상품은 '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'에 가입된 종사자(피공제자)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.

주요사고사례

종사자 상해	체육활동중 넘어져 골절되어 병원 치료 (골절진단비 등)	차량이동 중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(입원일당)	업무중 발달장애인 도전행동으로 상해를 입고 응급실진료 등으로 병원비 30만원 발생시 (상해치료비)
배상책임	발달장애인을 부축하여 계단 이동 중 종사자의 부주의로 낙상하면서 발달장애인이 상해입어 병원치료	송영서비스 중 종사자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 발달장애인이 주차장에 주차된 제3자 차량 파손	긴급돌봄 발달장애인에게 조리/제공한 음식물 이상으로 병원치료
발달장애인 상해	종사자의 부주의 등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등으로 발생한 단독 상해 사고		
비용손해	발달장애인 상해사고로 형사고소 당하여 과실치상에 의한 벌금형 부과		

사고접수 및 보상절차



사고발생 / 인지 → 사고상담 및 접수 → 손해증빙서류 구비 및 제출 → 서류 심사 공제금 지급/종결

전 화 02-3775-8839
팩 스 0505-361-9598
이메일 welfaremutual@daum.net

가입방법

1. **공제회 홈페이지(www.kwcu.or.kr) 접속**
   ▶ 기존 다른 공제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 '기관로그인'을 먼저 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.
2. 상단 메뉴 맞춤형종합공제 ▶ 발달장애인지원사업 ▶ 가입신청 바로가기 클릭
   ▶ 갱신 또는 재가입인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'계약갱신/재가입'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3. **정보** (기관정보, 계약정보, 인원명단) **입력/저장**
   ▶ 제공기관 지정서 및 통보서 파일 첨부
4. **청약사항 확인 및 청약서 출력 후 보관**
5. **공제료 입금**
   ▶ (1인당) 150,000원 (연간) * 가입인원수
   ▶ 우리은행 1005-004-720512 (예금주 한국사회복지공제회)

가입문의 02-3667-8830

The 행복 한국사회복지공제회
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